

민주노총, 회계공시 거부안 또 “부결”

■ 2월 12일 열린 민주노총 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거부안>이 찬반투표 끝에 42% 찬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재석 935명중 394명 찬성. 의결정족수 468명) 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작년의 경우 의결정족수에 9명 부족)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날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표 노동개악 원상회복, 회계공시 거부 결의(안)>

민주노총은 정권이 강제한 회계공시 제도가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탄압 수단일 뿐임을 확인하고 전면 거부한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윤석열표 노동개악의 상징인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함께 회계공시 폐기 입법 발의 및 조기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회계공시 시행령을 폐기하여 원상회복한다.

■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9월 노조법 시행령을 신설하여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표하도록 의무화 △ 노동부가 만든 공시시스템을 이용해 공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1천인 이상의 단위노조 등은 노동부가 만든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으로 공표해야 조합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원래 세액공제 대상에 노조 조합비(15%)가 포함돼 있었는데, 1천인 이상 조직에 대해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2023년 시행령 개정 직후 민주노총은 회계공시를 대표적인 윤석열표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포함한 산별조직들은 급작스러운 정책변동에 준비부족으로 당해 회계공시를 수용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1천인 이상 노조중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가 유일하게 지회 대의원대회를 거쳐 회계공시를 ‘거부’합니다.

이어서 작년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회계공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때문에 올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조합비(기부금항목)는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격렬한 토론 끝에 회계공시를 ‘수용’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결과입니다. ‘거부’에 대한 찬성률은 더 줄었습니다.

■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상급단체 결정에 따라 하급단체에 영향을 미치게 설계되었습니다. 풀이하면, 민주노총이 ‘거부’ 결정을 하면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들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민주노총이 ‘수용’ 하면 산하조직인 금속노조의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 조합원의 세제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노동조합 회계공시 수용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은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중 유일하게 회계공시를 거부했던 금속노조는 2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야”

■ 대표적인 노동가요 <노동악법 철폐가> (1991, 김호철)의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리라” 라는 가사는 민주노조운동의 주요한 구호이자 정신입니다. 부당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에는 악법에 불복함으로써 부당함을 폭로하고 악법을 무력화시킨 싸움이 있었습니다. 민족과 인종, 성(性), 계급에 대한 차별정책에 저항한 인권운동이 대표적이며, 노동운동의 노동법 개정투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공시 거부’ 반대론자들은 현장 혼란을 근거로 듭니다. 정확하게는 조합원 ‘손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조합비의 일부 돌려받았던 것이, 노조 상층의 결정으로 앞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니, 그 분노와 불만을 노조 집행부에게 돌리는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정확히 노리는 지점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회계공시 거부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현장의 혼란과 조합원의 피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계공시가 시행된지 3년차를 맞는 지금, 현장 간부들이 회계공시 거부에 대해 조직하고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없는지 곱씹어 볼 일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과 내란세력 청산을 외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저항의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는 결정이라 더 아쉽습니다.

‘조합비’에 대한 시각 조정도 필요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행령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고,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동시에 최근 근로시간면제제도(무급전임자)와 회계공시(세액공제) 이슈가 떠오르면서 현장에서 조합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은 조합비를 노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납부합니다. 노조가 권리확대와 현장변화를 기대하는 조합원들의 신념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조합비는 나와 동지를 위해 씁니다. 그렇다면 회계공시 거부로 조합비 일부를 국가를 통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손해’ ‘피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조합원이 매월 10만원의 조합비 납부를 동의하고 1년에 총12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18만원(15%)를 국가가 돌려줬습니다. 그 조합원은 1년에 조합비를 총102만원 납부한 셈이며, 그 노조는 18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한 것입니다. 조합원이 노조를 위해 120만원의 조합비를 ‘올곧히’ 납부했다고 여긴다면, 적어도 회계공시로 인해 ‘손실’을 운운하며 회계공시 거부를 주장하는 동지들을 나무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회계공시 논쟁을 통해 ‘우리 노조’를 위해서, 나와 동료들의 생존과 권리를 위해 만든 조직을 위해서, 조합비를 ‘올곧히’ (세액공제로 돌려받지 않고) 내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관점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아까운 내 조합비,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한다니!” 라는 불만이 ‘우리 노조’의 힘을 값어먹지는 않는지, 그 형국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 자들은 누구인지 되새겨볼 일입니다.